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92

발의연월일: 2025. 3. 11.

발 의 자:김태년 · 윤종군 · 김한규

윤후덕 • 손명수 • 전진숙

홍기원 · 이소영 · 박희승

임광현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한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, 예외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.

민간투자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며 정부가 고시하거나 민간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,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타당성분석과 적격성조사를 거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고 있음.

그런데 타당성분석과 적격성조사는 경제성 및 정책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는데 이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방법과 동일하고, 실무상 이러한 절차가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시에 수행되고 민간제안사업에 대 하여 실시되는 적격성조사는 이를 거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.

이에 적격성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재정사업으로 전환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 려는 것임(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79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9조제3항에 따른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려는 사업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) 제38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사업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8조(예비타당성조사) ① (생	제38조(예비타당성조사) ① (현행		
략)	과 같음)		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	②	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		
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		
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			
대상에서 제외한다.			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11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		
	간투자법」 제9조제3항에 따		
	른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민간		
	투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		
	환하여 추진하려는 사업		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		